“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2호 HYUNBULNEWS.COM 2025년 10월 29일(음력 9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한중일 불교 ‘황금 유대’ 30년, 세계 평화 이끌자” ‘세계 평화와 상생’을 기치로 시작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30주년을 맞았다. 한중일 불교계는 10월 17~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초심을 잊지 말고 미래를 함께 열어 나아가자’를 주제로 열린 교류회의에서 한중일 불교도 300여 명은 세계평화기원법회와 학술 강연회, 공동선언문 채택, 순례 등을 통해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계 평화 의지를 다졌다. 사진은 베이징 광제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마치고 촬영한 기념사진. **중국 베이징=김내영 기자** 〈관련기사 5면〉

조계종, 내년 예산 1054억원 편성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년도 예산안을 1054억 여원으로 편성했다. 제37대 집행부의 임기 마무리에 맞춰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복구 등 주요 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총무원 기획실은 10월 23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안과 기조를 발표했다. 총무원은 올해 8월 20일 제30차 종무회의에서 종무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지침을 결의하고 기획실을 중심으로 각 부서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어 10월 22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 보고하고, 10월 22일 제38차 종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내년은 제37대 집행부의 원만 회향과 제38대 집행부의 출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해”라며 “종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신속한 복구와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 선명상 프로그램 확산 등 집행부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제37대 집행부는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기치로 초발심을 잃지 않고 남은 기간까지 사부대중과 함께 정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실, 10월 23일 언론브리핑
2026년 예산안 편성 기조 발표
일반 · 특별회계 각 325 · 729억원
기념관 화재복구 52억원 반영도

기획실에 따르면 내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추가경정 예산 포함 기준)보다 5억 7281만원(-15%)이 줄어든 325억 2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찰별 책정액 현실화를 위해 중앙분담금은 2.5%(1억 4690만원), 직할분담금 5.5%(7740만원), 특별분담금 1.1%(7700만원), 직영분담금 6.2%(4억 6100만원), 문화유산분담금 2.2%(1억 5526만원) 증액됐다. 법인분담금과 미수분담금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반면 기타사업수입은 올해에 비해 74.1%가 감액됐는데, 이는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공모전에서 기획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작품접수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세출에서는 기념관 화재복구비에 시설 관련 비용이 포함되면서, 환경개선과 시설 보수에 투입되는 별도 예산은 감소했다. 또 제37·38대 총무원장 이·취임 법회 개최를 고려해 총무부 예산이 일부 상향됐으며,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포교부는 삼원통합에 따른 인건비·관공비 조정, 종교교과서 개발사업 종료 등으로 전체 예산은 감액됐지만, 출가장려 사업(3000만원)과 동련 40주년 후원의 날 지원(5000만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사회부는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9월 종정 성파 스님의 하버드대 초청 전시회 개최비 6000만원을 편성했다.

가장 큰 변화는 미디어홍보실 예산이다. ‘힘한 불교’ 확산과 미래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홍보영상 제작, 서포터즈 운영, 유튜브·SNS 콘텐츠 제작비 등이 포함되면서 1억 9540만원(59.5%) 증액, 총 예산 5억 2400만원이 배정됐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69억 1225만원(10.5%) 증액된 728억 9600만원 규모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등 시설 복구가 내년 2월 완료 예정인 만큼 복구비 52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10·27법난기념관 건립비는 설계비 등을 포함한 88억원,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기자재 구축 사업 국고 자부담 12억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지원금 3억원, 국제선명상대회 자부담 1억 3000만원, 선명상센터 건립 국고 자부담 3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조계종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5일 개원하는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계종, 사면심사위 구성 30일 이내로 ‘심사 종료’

총무원장 · 종회 · 본사 추천 등
위원 9인…위원장 장명 스님
10월 28일 마감 후 심사 예정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화합승가’ 실현을 위한 ‘사면·복권·경감’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 심사를 진행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은 장명 스님(직지사 주지)이 맡는다.

조계종은 10월 22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교구본사주지회의가 추천하는 3인의 사면심사위원을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사면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추천으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중앙종회의장 추천으로 중앙종회의원 태진 스님과 진각(통도사) 스님, 교구본사주지회의 추천으로 장명·정덕·무공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호계원 사무처장 도림 스님의 9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면·복권·경감은 징계자들의 자숙과 참회를 바탕으로 종단 화합을 도모하고 종단에서의 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공권정지 수징자 중 징계기간 3분의 1이 경과한 자 △제적 또는 법계강급 수징자 중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징계가 종료되거나 사면된 후 공권을 제한받고 있는 자에 한에 이뤄진다.

절차는 호법부의 기초조사를 거쳐 총무원장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수 마감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통과자에 대한 보고서는 총무원장이 검토한 뒤 종무회의 의결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마지막으로 종정 스님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첫 회의는 총무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호법부장·호계원 사무처장을 제외한 7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심사위원회는 첫 회의 소집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며, 결과는 즉시 총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사면심사위원회는 교구본사주지회의 직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장명 스님을 호선했다. 오는 10월 28일 사면·복권·경감 대상자 접수 마감 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총림 해제’ 동화사, 11월 14일 주지 선출

후보자 등록 11월 2~4일
동화사특위, 보고서 제출

동화사가 11월 14일 차기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올해 3월 총림 해제 이후 법정 공방, 주지 직무정지 등으로 혼란을 빚어 온 동화사가 새로운 주지 선출로 안정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조계종 제9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민 스님)는 11월 14일 오후 1시 동화사 설법전에서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을 다룰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이며 거주승 신고 기간은 10월 21~27일, 구성원명부 열람 기간은 11월 5~7일이다.

한편, 중앙종회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설암 스님, 이하 동화사특위)는 11월 5일 개최하는 정기회에 회계 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동화사특위는 10월 17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동화사와 말사의 종무행정 및 재무회계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사안들이 확인됐다”며 “‘사찰예산회계법’ 제37조 2항과 3항을 적용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사찰예산회계법’은 사찰에 재산 손실을 입혔을 때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호법부 고발과 사회법 제소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수령 기자**

Heungkuk 흥국생명
제례의식의 수행 주체인 사찰을 수익자(보험금 수령)로 지정할 수 있는
(무)흥국생명 49재 하늘소풍 제례 종신보험
누구나 좋은보험!

“죽고 나면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나?”
더 이상 자녀와 후손에게 부담은 그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인 제사 고민 끝!
이제 사찰에서 여법하게 모십니다.

다양한 보장금액으로
나의 재정 상황에 알맞게
든든한 미래 준비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하더라도 가입금액 전액 보장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등의 경우 부지급
선택사항
49재(천도재)와 기제사(1년~5년)를 기본으로 구성
범패, 바라, 위패봉안, 큰스님 영가법문 등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다비식까지 다양한 옵션

보험가입자(피보험자)
웰다잉! 내가 선택하는 사후(死後)
유가족
제사 부담 해소, 고인에 대한 예우
사찰
안정적인 제사 확대

상담문의전화
선우HK 보험대리점 1522-1543
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8022호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본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본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선우HK보험대리점(등록번호 제 2025030822호) 및 소속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계약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자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승인번호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5-06402호 (2025-09-23~2026-09-22)